

##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00-1
----------	--------

제출년월일 : '99.11.

제출자 : 달서구청장

### 1. 제정취지

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마목 및 동법 제15조

### 3. 주요골자

- 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함(안 제2조).
- 지휘자, 반주자등 합창단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 4조).
- 합창단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에 불응한 때등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의 예산으로 운영하며, 지휘자·반주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9조).

### 4. 조례안 : 따로붙임

##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단장은 단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단장등의 직무) ①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연주를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지휘자는 당해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반주자는 당해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기타 단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음악에 소질과 취미가 있는 성인 남녀중에서 실기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지휘자 및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에 불응한 자
2.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자
3.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

제6조(공연) 합창단은 연 1회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진다.

제7조(간사) 합창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예산)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의 예산으로 운영한다.

제9조(수당등) 지휘자·반주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합창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의 합창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 ③(지휘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의 지휘자 및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2000년 3월 31일로 만료한다.